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h1>보도자료</h1> <p>“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기관”</p>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이 자료는 1월 10일(수)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방송인터넷 매체는 1월 9일(화) 12시]			
배포일	2018년 1월 8일(월) (총 12쪽)	담당부서	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
		담당자	김제란 팀장 (043-880-5841) 최윤희 대리 (043-880-5843)

테스터 화장품, 위생 관리 강화 필요

- 다수 제품 개봉 상태로 비치, 미생물 오염 확인돼 -

소비자들이 다양한 색조화장품 중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미리 사용해보고 구입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화장품 매장에서 ‘테스터 화장품’을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테스터 화장품은 위해미생물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 ‘테스터(tester) 화장품’이란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하기 전 사용해 볼 수 있도록 매장에 비치한 견본품을 의미함.
- ※ 현재 법적으로 규정된 정의는 없으며 ‘테스터 제품’, ‘테스트용 제품’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음. 주로 판매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며 ‘테스터(tester)’, ‘try me’ 등 테스터 화장품임을 알 수 있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음.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위치한 16개 매장의 42개 테스터 화장품*을 대상으로 한 비치·표시실태 및 미생물** 위생도 조사결과로 밝혀졌다.

- * 아이섀도 16개, 마스크라 10개, 립스틱·립틴트 등(이하 립제품) 16개 제품
- ** 미생물 4종 : 총 호기성 생균수,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녹농균

- **총 호기성 생균수** : 살아있는 세균과 진균 수를 측정하는 것임. 세균 및 진균에 오염된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피부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상처가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 염증까지 발생할 수 있음.
- **황색포도상구균** : 호기성 혹은 통성혐기성 그람양성세균으로 사람의 피부나 점막에 집락을 형성하고 높은 보균율로 인하여 인체에 매우 흔한 감염증(피부질환, 구토, 설사, 복통 및 오심 등)을 유발할 수 있음.
- **대장균** : 사람을 포함해서 포유류의 장관을 기생장소로 하고 있는 장내 세균으로 설사, 발열, 구토 및 복통 등을 유발 할 수 있음.
- **녹농균** : 패혈증, 전신감염, 채낭포성 섬유증 환자에게 난치성 감염 등을 일으키는 병원성 세균임

□ 다수 제품 뚜껑 없이 개봉된 상태로 비치, 개봉일자 기재 필요

테스터 화장품은 뚜껑 없이 개봉된 상태로 장시간 노출될 경우 공기 중의 먼지·습기, 사용자간의 교차오염 등으로 위해미생물이 쉽게 오염·증식될 수 있으나

매장 내 다수 테스터 화장품이 개봉된 상태로 비치되어 있었고, 개봉일자도 기재되어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6개 중 13개 매장(81.3%)에서는 아이섀도 제품을, 9개 매장(56.3%)에서는 고체형 제품(립스틱)을 뚜껑이나 덮개 없이 개봉된 상태로 비치하고 있었고, 제품을 위생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일회용 도구(브러시 등)를 제공하는 곳은 1개(6.3%) 매장에 불과했다.

[(예시) 매장 비치 테스터 화장품]

뚜껑(덮개) 有			뚜껑(덮개) 無	
				
아이섀도	마스카라	립스틱	아이섀도	립스틱

또한, 조사대상 테스터 화장품 42개 중 6개 (14.3%)*만 개봉일자가 기재되어 있었고, 13개 (31.0%)** 제품은 유통기한·제조일자도 확인할 수 없었다.

* 마스카라 3개, 립제품 3개

** 아이섀도 12개, 마스카라 1개

[(예시) 개봉일자 기재 테스터 화장품]



□ 3개 중 1개 제품은 위생 불량

조사대상 테스터 화장품 42개 중 14개 제품(33.3%)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미생물이 검출돼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개봉된 화장품에 대한 미생물 기준이 없어 유통화장품 미생물 기준을 준용

아이섀도 16개 중 2개 제품(12.5%)에서 '총 호기성 생균'이 최소 510~최대 2,300 cfu/g 수준으로 기준(500 이하) 초과 검출되었고, 1개 제품(6.3%)에서는 병원성 세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

마스카라 10개 중 5개 제품(50.0%)에서 '총 호기성 생균'이 최소 550~최대 2,200 cfu/g 수준으로 기준(500 이하) 초과 검출되었다.

립제품 16개 중 4개 제품(25.0%)에서는 '총 호기성 생균'이 최소 1,530~최대 2,140,000cfu/g 수준으로 기준(1,000 이하) 초과 검출되었고, 3개 제품(18.8%)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

* 1개 제품은 총 호기성 생균·황색포도상구균 중복 검출

아이새도·마스카라·립제품 등의 용기는 대부분 뚜껑을 열어 사용하는 단지 형태 (Open jar)로 튜브(Tube) 또는 펌프(Pump)식 제품보다 사용자들로 인한 교차오염 위험이 높으며, 오염된 제품을 눈·입술 등과 같이 민감한 부위에 사용할 경우, 피부질환·염증 등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위생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유형별 위해미생물 기준 초과 검출 제품 수]

(단위 : cfu/g(mL))

구분	총 호기성 생균 수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녹농균
아이새도	2개 (510~2,300)	1개 (검출)	불검출	불검출
마스카라	5개 (550~2,200)	불검출		
립제품	4개 (1,530~2,140,000)	3개* (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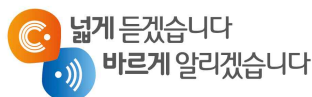
* 1개 제품 중복 검출(총 호기성 생균·황색포도상구균)

※ 기준 : 총 호기성 생균 수(눈 화장용 500 이하/ 기타화장품 1,000 이하), 황색포도상구균·대장균·녹농균(불검출)

□ 테스터 화장품 위생 및 안전 관리 강화와 안전한 사용법 준수 필요

한국소비자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테스터 화장품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화장품협회에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관련 업체에는 매장 내 테스터 화장품 위생관리 강화를 권고하였다. 관련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위생관리 (테스터 화장품 비치관리 및 소비자 사용법 안내·홍보 등)를 철저히 하기로 하였다. 한편, 식약처는 블로그·SNS 등을 통해 ▲소비자의 테스터 화장품 안전한 사용법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테스터 화장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사용자들 간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일회용 도구(브러시 등)를 이용할 것 ▲눈·입술 부위에 직접적인 사용은 자제하고 손목·손등 부위에 테스트할 것 ▲제품에 기재된 개봉일자나 유통기한을 확인할 것 ▲테스트 후 최대한 빨리 제거할 것 등을 당부하였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 붙임 >

1 정의 및 현황

가. 화장품

- (정의)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함¹⁾.
- (유형) 화장품은 눈 화장용 제품류, 색조 화장용 제품류, 기초 화장용 제품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등 총 8개의 유형으로 분류됨²⁾.
 - “눈 화장용 제품류”는 아이섀도·마스카라 등, “색조 화장용 제품류”는 페이스 파우더·립스틱 등 눈을 제외한 인체에 사용하는 색조 제품을 말함.

나. 테스터 화장품

- (정의) ‘테스터(tester) 화장품’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하기 전 사용해 볼 수 있도록 매장에 비치한 견본품을 의미함.
 - 주로 판매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테스터 화장품으로 제공하고, ‘테스터(tester)’, ‘Try me’등 테스터 제품임을 알 수 있는 문구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 제품 앞이나 옆쪽의 선반에 비치함.
 - ※ 현재 ‘테스터 화장품’은 법적으로 규정된 정의가 없으며 ‘테스터 제품’, ‘테스트용 제품’ 등의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음.
- (현황) 색과 기능이 다양한 눈 및 색조 화장용 제품류 중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 구매 결정 전 신체에 직접 테스터 제품을 사용해 보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음.
 - 립스틱의 경우 동일 제품이라도 개인마다 입술 색상에 따라 실제 발색에 차이가 생겨 다수의 소비자들이 직접 입술에 사용해보고 제품을 구입함³⁾.
 - 그러나 눈, 입술과 같은 민감한 부위에 사용되는 마스카라, 아이섀도, 립스틱 등의 용기는 뚜껑을 열어 사용하는 단지 형태(Open jar)가 많아 튜브(Tube) 또는 펌프(Pump)식 제품보다 오염 가능성이 높음.

1) 「화장품법」 제2조(정의)

2)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3(화장품 유형과 사용 시의 주의사항)

3) 뷰티경제, 2017.8.25., 로드샵 테스터화장품 ‘세균 득실득실’...위생관리 규정없어 ‘불안’

2 관련 규정

가. 기준·규격

- 물과 영양성분 등으로 구성된 화장품은 미생물 오염이 쉽게 발생할 수 있어 미생물 한도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 유형별 화장품은 미생물 (총 호기성 생균수,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녹농균 등) 한도 기준을 준수해야 함.
- 그러나 테스트 화장품과 같이 개봉된 화장품은 위생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미생물 한도 기준이 없음.
 - 개봉 전 오염되지 않은 화장품이라고 해도 개봉하여 사용하는 중에 오염될 수 있으나 현재 개봉 제품에 대한 미생물 한도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음.

[미생물 기준·규격]

(단위 : g/mL)

미생물별 제품별	총 호기성 생균수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녹농균
눈 화장용 제품류	500개 이하	불검출		
색조 화장용 제품류	1,000개 이하			

나. 표시기준

- 화장품은 소비자가 제품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1차 또는 2차 포장에 규정된 기재사항을 반드시 표기해야 함⁴⁾.
- 용량이 10ml(g) 이하인 제품은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음⁵⁾.

4)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5)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 제1항 제1호

3 현장실태 조사 결과

가. 제품 비치

- 일부 매장의 테스터 화장품은 뚜껑이나 덮개 없이 개봉된 상태로 비치되어 있었으며, 동일 화장품 브랜드임에도 지점별 차이가 있었음.
- (아이새도) 조사대상 16개 중 3개 매장만 뚜껑 또는 덮개를 덮어 제품이 외부 공기와 닿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었고, 13개 매장은 일부 제품을 뚜껑이나 덮개 없이 비치함.
 - 뚜껑이나 덮개 없이 제품을 비치한 13개 중 4개 매장의 경우 한 가지 색으로 구성된 제품은 뚜껑을 닫아 진열하였으나, 여러 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예: 아이새도 팔레트)은 개봉된 상태로 비치함.

[(예시) 매장 비치 유형별 아이새도]



- 또한, 1개 브랜드는 동일 브랜드임에도 각 매장마다 테스터 제품 진열 상태가 달랐음(예: A브랜드의 A-1 매장은 뚜껑(덮개)을 닫은 상태로, A-2 매장은 개봉된 상태로 비치함).
- (마스카라) 16개 매장 모두 제품의 뚜껑을 닫은 상태로 비치함.
- (립제품) 립제품은 크게 립스틱 같은 고체형(스틱) 제품과 립글로스·립틴트와 같은 액체형 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 16개 매장 모두 액체형 제품은 뚜껑을 닫아 비치했으나, 9개 매장은 고체형 제품을 개봉된 상태로 비치함.
 - 또한, 5개 브랜드는 동일 브랜드임에도 각 매장마다 테스터 제품 비치 상태가 달랐음(예: A브랜드의 A-1 매장은 뚜껑(덮개)을 닫은 상태로, A-2 매장은 개봉된 상태로 비치함).
- 또한, 16개 중 1개 매장만 테스터 제품을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브러시(brush)를 구비하고 있었고, 나머지 매장은 화장솜 이외에 별도의 일회용 도구를 비치하지 않고 있었음.

[(예시) 매장 비치 일회용 도구]



나. 표시사항(개봉일자 등)

- 조사대상 42개(아이새도 16개, 마스크라 10개, 립제품 16개) 중 6개 제품만 개봉일자를 기재하고 있었고, 일부 제품은 제품의 유통기한·제조일자 등도 확인할 수 없었음.
- (아이새도) 조사대상 16개 중 개봉일자가 기재된 제품은 없었으나 4개 제품은 제품의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있었음. 그 외 12개 제품은 제품의 유통기한·제조일자도 확인할 수 없었음.

[(예시) 매장 비치 테스터 화장품(아이새도)]

유통일자(제조일자) 확인 가능	유통일자(제조일자) 확인 불가	
	 <p style="text-align: center;"><앞면></p>	 <p style="text-align: center;"><뒷면></p>

- (마스크라) 조사대상 10개 중 3개 제품만 개봉일자가 기재되어 있었음. 그 외 6개 제품은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는 확인할 수 있었음. 1개 제품은 유통기한도 지워져 확인이 불가능했음.
- (립제품) 조사대상 16개 중 3개 제품은 개봉일자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그 외 13개 제품은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만 확인이 가능하였음.

[(예시) 매장 비치 테스터 화장품(마스크라립스틱)]

개봉일자 기재	
 <p style="text-align: center;">마스크라</p>	 <p style="text-align: center;">립스틱</p>

4

시험검사 결과

가. 아이새도

- 조사대상 16개 중 2개 제품에서 ‘총 호기성 생균’이 최소 510~최대 2,300 cfu/g 수준으로 기준(500 이하) 초과 검출되었으며, 1개 제품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됨. 대장균·녹농균은 전 제품에서 불검출됨.
- 총 호기성 생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 초과 검출된 3개 제품은 개봉된 상태로 비치되어 있었고, 일회용 브러시 등이 제공되지 않아 사용자들로 인한 교차오염 가능성이 높았음.

[미생물 기준 초과 제품(아이새도)]

(단위 : cfu/g(mL))

순번	총 호기성 생균수(기준 : 500 이하)	황색포도상구균(기준 : 불검출)
1	510	기준 적합(불검출)
2	2,300	기준 적합(불검출)
3	기준 적합	검출

나. 마스크라

- 조사대상 10개 중 5개 제품에서 ‘총 호기성 생균’이 최소 550~최대 2,200 cfu/g 수준으로 기준(500 이하) 초과 검출됨. 황색포도상구균·대장균·녹농균은 전 제품에서 불검출됨.
- 총 호기성 생균이 기준 초과 검출된 5개 제품은 뚜껑이 닫힌 채로 비치되어 있었으나, 신체에 접촉하는 부위(술·막대 부분)가 용기 내부의 액체에 계속 잠겨있고 사용할 때마다 공기 중에 수시로 노출돼 사용자들로 인한 교차오염 가능성이 높았음.

[미생물 기준 초과 제품(마스크라)]

(단위 : cfu/g(mL))

순번	총 호기성 생균수(기준 : 500이하)
1	1,625
2	1,125
3	2,200
4	550
5	1,425

다. 립제품

- 조사대상 16개 중 4개 제품에서 ‘총 호기성 생균’이 최소 1,530~최대 2,140,000 cfu/g 수준으로 기준(1,000 이하) 초과 검출되었고, 3개 제품에서는 ‘황색포도상

구균'이 검출됨(1개 제품 중복 검출). 대장균·녹농균은 전 제품에서 불검출됨.

- 총 호기성 생균수가 가장 높게 검출된 제품(2,140,000cfu/g)은 개봉 일자가 2017.5.15.로 개봉일로부터 약 6개월 경과한 제품이었음.
- 총 호기성 생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 초과 검출된 6개 제품 모두 뚜껑이 닫힌 상태로 비치되어 있었으나, 입술에 사용하는 립제품 특성상 소비자들 간 교차오염 가능성이 높았음. 특히, 액체형 제품은 미생물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신체에 접촉하는 부위(술·막대 부분)가 사용 이후 용기 내부 액체에 수시로 잠겨있게 됨에 따라 반복적인 오염이 발생할 수 있었음.

[미생물 기준 초과 제품(립제품)]

(단위 : cfu/g(mL))

순번	총 호기성 생균수(기준 : 1,000 이하)	황색포도상구균(기준 : 불검출)
1	2,450	기준 적합(불검출)
2	기준 적합	검출
3	2,100	검출
4	1,530	기준 적합(불검출)
5	2,140,000	기준 적합(불검출)
6	기준 적합	검출

< 총 호기성 생균수⁶⁾>

- 총호기성생균수는 살아있는 세균과 진균 수를 측정된 것임.
- 세균 및 진균에 오염된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피부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상처가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 염증까지 발생할 수 있음.
 - '세균'은 그람양성 및 음성으로 구별되며 그람양성에는 포도상구균, 그람음성에는 녹농균, 대장균 등이 속함. 세균에 의한 피부질환으로는 모낭염, 종기, 부스럼, 맥립종, 화농성감염증 등이 있음.
 - '진균'은 포자를 형성하면서 증식하는 곰팡이, 효모 등을 말함. 진균류에 의한 피부질환으로는 백선증, 어루러기 등이 있음.

< 황색포도상구균⁷⁾>

- 호기성 혹은 통성혐기성 그람양성세균으로 사람의 피부나 점막에 집락을 형성하고 높은 보균율로 인하여 인체에 매우 흔한 감염증을 일으킴.
- 대표적인 화농균이며 감염시 피부질환, 구토, 설사, 복통 및 오심(구역)을 일으킬 수 있으며, 눈에 감염시 세균성 각막염을 유발할 수도 있음.

< 대장균⁸⁾>

- 사람을 포함해서 포유류의 장관을 기생장소로 하고 있는 장내 세균으로 화장품 회사에서는 청정도의 지표균으로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균임.
- 장관출혈성 대장균은 강력한 세포독성을 나타내는 베로독소를 생산하고 대장점막의 출혈, 설사, 발열, 구토 및 복통 등 배탈 증상이 나타남.

< 녹농균⁹⁾>

- 패혈증, 전신감염, 만성기도 감염증과 채낭포성 섬유증 환자에게 난치성 감염을 일으키는 병원성 세균임.
- 요도 감염과 콘택트렌즈 사용자의 각막궤양에서도 검출되고 있으며 각막궤양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감염되면 실명될 수 있음.

6) 참조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1.2., 화장품의 미생물한도 기준 및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조지혜, 2017.8., 에어쿠션 파운데이션 분침의 피부 타입에 따른 미생물 오염도

7) 참조 : 성형경·변현영·김소라·박미정, 2014.3., 콘택트렌즈 관리용품의 살균력 효능 검사법 비교/ 식품의약품안전처, 우리 손에는 어떤 무서운 균이 들어 있을까요?/ COSIN, 2014.6.4., 안전 불감증, 화장품 미생물 관리 필요하다

8) 참조 : 식품의약품안전처, 우리 손에는 어떤 무서운 균이 들어 있을까요?/ COSIN, 2014.6.4., 안전 불감증, 화장품 미생물 관리 필요하다

9) 참조 : COSIN, 2014.6.4., 안전 불감증, 화장품 미생물 관리 필요하다

5 조치계획

-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테스트 화장품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화장품협회에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관련 업체에는 테스트 화장품 위생 관리 강화를 권고하였음. 한편, 식약처는 블로그·SNS 등을 통해 ▲소비자의 테스트 화장품 안전한 사용법을 홍보해 나갈 계획임.
- 테스트 화장품이 최대한 오염되지 않게 뚜껑을 닫은 상태로 개봉일자를 기재해 비치하고 제품을 자주 소독해주며, 소비자들이 제품을 손으로 직접 접촉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일회용 도구(브러시 등)를 제공하는 등 업체의 자율적 위생 관리 강화를 권고함.
- 또한, 테스트 화장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사용자들 간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일회용 도구(브러시)를 이용할 것 ▲눈·입술 부위에 직접적인 사용은 자제하고 손목·손등 부위에 테스트할 것 ▲제품에 기재된 개봉 일자나 유통기한을 확인할 것 ▲테스트 후 최대한 빨리 제거할 것 등을 당부함.

6

테스터 화장품 안전한 사용법¹⁰⁾**1. 테스터 화장품 사용 시 가능한 사업자에게 화장솜 등을 요청해 윗부분을 닦아내고 일회용 도구(브러시, 면봉 등)를 사용해 테스트 하도록 합니다.**

테스터 화장품은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함에 따라 손이나 입 등의 미생물에 의해 교차오염될 수 있으므로 고체형 제품은 화장솜 등을 이용해 윗부분을 닦아 낸 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일회용 도구(브러시, 면봉 등)를 요청해 테스트하고 사용한 일회용 도구는 재사용하지 않고 즉시 폐기하도록 합니다.

2. 테스터 제품 사용 시 최대한 눈·입술 부위에 직접적인 사용은 자제 하도록 합니다.

눈과 입술 같은 민감한 부위와 상처난 부위에 오염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염증 등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손목이나 손등 같은 부위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제품에 기재된 개봉일자나 유통기한 확인 후 제품을 테스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품은 사용시간이 길고 빈도가 높을수록 오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품에 기재된 개봉일자나 유통기한을 확인한 후 개봉일자가 오래되었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피부에 테스트한 제품은 최대한 빨리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촉시간과 면적이 클수록 미생물 오염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므로 피부에 테스트한 제품은 화장솜 등으로 최대한 빨리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10) 참조 : FDA, 2016.3.22., Use Eye cosmetics Safely/ 하이닥, 2017.10.31., 피부 건강에 위험한 화장품 매장 테스터? 비위생적인 테스터로부터 피부 지키는 법/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과제), 2013.11., 개봉화장품의 미생물 오염에 따른 적정 사용시간 가이드를 위한 연구/ 헬스조선, 2014.7.8., 화장품 테스터, 어울리는 것 찾다가 피부 망치겠네/ 이데일리, 2010.8.26. 화장품 테스터, 함부로 사용마세요

< 첨부 >

구분		표시사항		시험결과 (기준)				
순번	유형	유통기한/ 제조일자	개봉일자	총호기상생균수(cfu/g) (기준 500/ 1,000 이하)	항색포도상구균 (기준:불검출)	대장균 (기준:불검출)	녹농균 (기준:불검출)	
1	관 화 장 용 제 품 류	-	미표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		21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		-		3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		-		51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		20200329		4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6		20200524		14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7		20170823제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8		-		2,30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9		-		12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		-		47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1		-		35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2		-		31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3		-		17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4		-		11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5		20200215		140	검출	불검출	불검출	
16		-		5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7		20190905		미표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8		20190905		미표시	1,625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9		20200425		미표시	25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0		-		미표시	1,125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1		20170921제조		20171010	25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2		20170921제조		미표시	2,20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3		20170616제조		미표시	125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4		20170523제조		미표시	55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5		-		20171001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6		-		20170915	1,425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7	색 조 화 장 용 제 품 류	20200924	미표시	2,45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8		20200213	미표시	530	검출	불검출	불검출	
29		20200619	미표시	2,100	검출	불검출	불검출	
30		20200620	미표시	74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1		20200726	20170908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2		20200726	미표시	46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3		20170819제조	미표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4		20170919제조	미표시	1,53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5		-	20170718	4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6		201703제조	20170515	2,140,00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7		20200921	미표시	270	검출	불검출	불검출	
38		20200913	미표시	49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9		20170921제조	미표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0		20170911제조	미표시	44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1		20190518	미표시	88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2		20190110	미표시	54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 기준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기준」 준용

- 총 호기성 생균수 : 눈화장용 제품류(500 이하)/ 기타 화장품(1,000 이하)